

-사회적 배려계층의 자립·자활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-

업무협약서(MOU)

안성시시설관리공단(이하 협약기관이라 한다)과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(이하 협약기관이라 한다)는 지역 내 사회적 배려 계층의 근로역량 배양 및 근로기회 제공과 지역사회의 환경정비를 위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

본 협약은 안성시의 사회적 배려 계층의 근로역량 배양 및 근로기회 제공과 지역사회의 환경정비 개선 지원을 통한 상호 협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기본원칙)

협약기관을 본 협약의 효율적인 수행과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호혜적이 차원에서 협력한다.

제3조(협력내용)

협약기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협력한다.

○ 안성시시설관리공단

1. 사회적 배려계층 일자리 창출 및 연계 지원
2. 시설의 견학 및 환경교육
3. 재활용품 장려지원 사업에 따른 재활용품 수거 및 지원
4. 기타 양측의 상생 협력과 상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○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

1. 청소·재활용품 수거 사업 추진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개선 협력
2. 사회적 배려계층의 환경 의식 개선 향상에 기여
3.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지역사회대상 간접 홍보
4. 기타 양측의 상생 협력과 상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4조(세부사항)

제3조의 협력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시행한다.

제5조(비밀유지)

양 기관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취득한 기밀 사항 및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아니한다.

제6조(협약기간)

본 협약은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, 어느 일방으로부터 유효기간에 관한 통보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그 효력이 3년 단위로 연장된다.

제7조(해 석)

본 협약서의 해석에 있어 이의가 있거나 협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협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8조(기타)

본 협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협약 상례에 따른다.

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. 이 협약서의 효력은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다.

2020년 12월 7일



안성시시설관리공단

이 사장
최갑선
최갑선



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

센터장
심상원